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5년 08월 28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5.08.2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가. (현행과 동일)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삭제> (이하 현행과 동일)
		(2)~ (5) (생략)	(2)~ (5) (현행과 동일)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8.11 기준으로 업데이트

<끝>.